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 1200호

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공 고

- 공고 제2014- 1609호 해오름(근린공원)주차장 급지선정 및 유료화 공고 2
- 공고 제2014- 16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3
- 공고 제2014- 16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13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14
 공고 제2014- 60호 예정 공고

고 시

- 고시 제2014- 13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15
 지형도면 고시(정정)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2014-1609호

공영주차장 급지 선정 및 유료화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오름』(근린공원)주차장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및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에 의거 유료화에 따른 급지 및 운영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2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시 행 일 : 2014. 11. 10

2. 급지 및 운영사업자

구분	주 차 장 명	위 치	면수	급지	운영사업자
노외	해오름 공영주차장	논현동 775	82	1급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032-460-0530

3. 월정기 주차요금

구 분	급 지	1회 주차권		전 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30분까지	15분초과마다		
노외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16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평생학습관 개관·운영 및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정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평생학습에 대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
 -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부터 제22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052, FAX 453-5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평생학습관 개관·운영 및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정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에 대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부터 제18조)
-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부터 제22조)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징수
 - 평생학습관 개관 및 휴관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학습자에 대한 안전 보험 가입

☐ 본 문 : “별 첨”☐ 참고사항(관련규정) : 「평생교육법」(교육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남동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구청장이 평생교육 진흥 및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구청장이 각 동별 지역주민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 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공공시설·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①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 국·과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평생교육관련 각종 공모사업 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15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 연구 및 홍보
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3. 구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은행제 운영
5.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6.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7.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8.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9. 제17조 따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0. 문자해독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강사 지원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등

제18조(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 인력 및 평생학습매니저를 양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평생학습관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22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에 발생한 생명상·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수료증 등 교부)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구청장 자료요구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4-16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10. 22. - 2014. 11. 12.(21일간)

○ 직권말소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명	영 업 소	대 표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제2007-24호 (2007.10.18)	스페이스빔 PC방	남동구 문화로 91, 3층(구월동)	김 * 희 (78****-2)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u>직권말소</u> <u>(14.10.22)</u>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기관 및 문의처

- 처분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1008번지)
- 문 의 처 : 032)453-2143 (FAX 453-2139)

2014 년 10 월 22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4-60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4. 11. 4.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4. 10. 23 ~ 2014. 11. 3(12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구월3-410	타미진	권*인	문화서로4번길 5-15, 1층(구월동)	사업자등록폐업	2014.2.17	2014.11.4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4. 11. 3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4. 10.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13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10. 2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학교	초등학교 (신월)	구월동 612-1번지 일원	13,756 (변경없음)	2001.6.14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신월 초등학교	◦ 지형도면 상의 도시계획선이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수정	◦ 2013. 4.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선과 지적도가 불일치 하여 이를 정정하기 위한 지형도면고시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